



인가번호 제 2021-1460-SO-3563 호

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

조 합 명 : 경기케이엠씨사회적협동조합

이사장 성명 : 이상호

주 소 :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167(평내동)
B106호

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제1항에 따라
위의 설립을 인가합니다.

2021년 7월 14일

보건복지부장관

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경기케이엠씨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귀하
(경유)

제목 **경기케이엠씨사회적협동조합 소재지 변경에 따른 설립인가증 재발급 및 정관변경 인가 알림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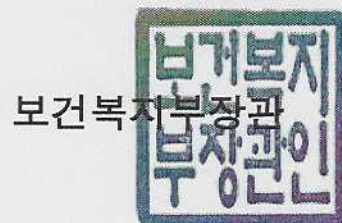
1. 귀 조합에서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재발급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관련입니다.
2. 귀 조합의 신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아래와 같이 재발급하고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정관변경을 인가하니,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및 「아동복지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 변경사항 : 소재지 변경 및 정관 제72조 수정

○ 검토결과 : 정관의 규정에 따라 총회 의결 후 총회 의사록 등 구비서류를 갖추었음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소재지	경기 남양주시 평내로 167, 401호	경기 남양주시 평내로 167, B106호
정관	제72조(청산 잔여 재산의 처리) 조합이 <u>해산</u> 후 채무를 변제하고 <u>청산</u>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. 1.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.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. 비영리법인·공익법인 4. 국고	제72조(잔여 재산의 처리) 조합이 <u>해산</u> 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<u>변제</u> 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. 1.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.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. 비영리법인·공익법인 4. 국고

붙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1부(재발급). 끝.



민간전문가 **이하늘**

행정사무관 **박종용**

마을돌봄TF팀장 **송영진**

전결 2021.8.26.

협조자

시행 인구정책총괄과-4906 (2021. 8. 26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7층 인구정책총괄과 / 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3379 팩스번호 044-202-3965 / leehaneul128@korea.kr / 비공개(6,7)